www.fomek.or.kr | www.mme.or.kr

2024년도
중견기업 지원시책

1. 조세

산업통상자원부

FOMEK 한국중견기업연합회

2024년도

중견기업 지원시책

❶ 조 세

이 책자는 2024년 3월 기준 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중견기업 관련 조세제도를 요약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발간 이후 법령 및 제도 등이 변경될 수 있으니
실무에 적용 시 개별 사안별로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법령 확인 사이트

-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https://taxlaw.nts.go.kr/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 국회법률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

2024년도

중견기업 지원시책

1. 조세

Contents

Ⅰ. 중견기업 조세제도 요약 ····· 1

1. 중견기업 정의 ····· 5
2.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8
3. 중소기업 범위 비교(중소기업기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 11
4. 2024년 중견기업 조세제도 주요 개정내용 ····· 12
5. 2024년 중견기업 조세제도 요약 ····· 15

Ⅱ. 중견기업 관련 조세지원 ····· 21

(1) 투자촉진 ····· 23

1. 통합투자세액공제 ····· 25
2.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 28
3.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 30
4. 중소·중견기업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 32
5.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관세경감 ····· 33
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34
7.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 35
8.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 36

(2) R&D ····· 37

1.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39
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 42
3.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 44
4. 기업부설연구소 용도 부동산 지방세 감면 ····· 46
5.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 48

Contents

(3) 가업승계 ····· 51

1. 가업상속공제 ····· 53
2.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56
3.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 59

참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 61

(4) 고용촉진 ····· 63

1. 특성화고 등 졸업자 병역 이행 후 복직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65
2. 경력단절 여성·육아휴직 복직자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66
3. 근로소득증대세제 ····· 68
4.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대한 세제지원 ····· 71
5.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73
6. 통합고용세액공제 ····· 75
7.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77
8. 해외주재원 인건비 손금 산입 ····· 79

(5) 구조조정·M&A ····· 81

1.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 83
2.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 85
3.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87
4.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 89
5. 내국법인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91
6.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 92

(6) 지방이전 ····· 95

1.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97
2. 법인의 본사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양도차익 법인세 과세특례 ····· 99
3. 법인의 공장·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101
4.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 104

(7) 상생협력 촉진 ····· 107

1.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109
2.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시 세액공제 ····· 111

(8) 기타 조세지원 ····· 113

1.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115
2. 수출 중소·중견기업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 116
3. 특허보세구역의 특례 ····· 117

Ⅲ. 중견·대기업 과세제도 ····· 119

1. 일감몰아주기 과세 ····· 123
2. 일감떼어주기 과세 ····· 126

Ⅳ. 조세특례 제한 ····· 129

1. 최저한세에 따른 감면배제 ····· 133
2. 중복지원의 배제 ····· 135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 138
4. 이월결손금 연간 공제한도 ····· 140

Ⅴ. 기 타 ····· 141

1.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 145
2.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 148
3. 법인세율 산정 ····· 150

2024년도
중견기업 지원시책

1. 조세

Ⅰ
중견기업 조세제도 요약

중견기업 조세제도 요약

1. 중견기업 정의
2.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3. 중소기업 범위 비교(중소기업기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4. 2024년 중견기업 조세제도 주요 개정내용
5. 2024년 중견기업 조세제도 요약

1 중견기업 정의

☑ 정의

■ “중견기업”이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함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이 아닐 것
- 지분 소유,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용어설명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이란?]

-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기업일 것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기업 또는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해당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일 것
  ① 금융업
  ② 보험 및 연금업
  ③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 중소·중견기업 판단기준

■ 규모기준 : 3년 평균매출액

주업종	중소기업	후보기업*	중견기업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4. 1차 금속 제조업 5. 전기장비제조업 6. 가구제조업	1,500억원 이하	1,000억원 이상	1,500억원 초과
7. 농업, 임업 및 어업 8. 광업 9. 식료품 제조업 10. 담배 제조업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 제외)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 제외)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 제외)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22. 수도업 23. 건설업 24. 도매 및 소매업	1,000억원 이하	700억원 이상	1,000억원 초과
25. 음료 제조업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31. 수도,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 제외) 32. 운수 및 창고업 33. 정보통신업	800억원 이하	550억원 이상	800억원 초과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6.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 제외)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00억원 이하	400억원 이상	600억원 초과
40. 숙박 및 음식점업 41. 금융 및 보험업(중견기업 해당없음) 42. 부동산업 43. 임대업 44. 교육서비스업	400억원 이하	300억원 이상	400억원 초과

* 중견기업 후보기업: 중소기업 중 중견기업으로 성장가능성이 높고 혁신역량이 있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업

■ 자산총액기준

-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초과시 최초 1회에 한하여 유예기간 적용

■ 독립성기준

-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10조원 미만 법인이 주식 등 30%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일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유예기간 적용('16.4.28 이후부터)
- 관계기업은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매출액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에 충족하는 기업일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유예기간 적용('15.1.1 이후부터)

2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준은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

☑ 규모기준

-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업종의 평균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별표 1의 기준을 충족할 것
-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일 것

|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

해당 기업의 주업종	분류기호	규모기준 (평균매출액)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제조업	C28	
6. 가구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1,000억원 이하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석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 제외)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 제외)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 제외)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22. 수도업	E36	
23. 건설업	F	
24. 도매 및 소매업	G	

해당 기업의 주업종	분류기호	규모기준 (평균매출액)
25. 음료 제조업	C11	800억원 이하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1. 수도,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 제외)	E(E36제외)	
32. 운수 및 창고업,	H	
33. 정보통신업	J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600억원 이하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 제외)	N(N76제외)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40. 숙박 및 음식적업	I	400억원 이하
41. 금융 및 보험업	K	
42. 부동산업	L	
43. 임대업	N76	
44. 교육서비스업	P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독립성기준

■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의 30%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 등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업

  * 관계기업: 기업 간의 주식 등 출자로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

☑ 유예기간

■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부여

■ 단, 아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중소기업과 '유예기간 중인 기업'을 합병하여 유예기간 중인 기업이 당초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중소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속하는 경우
- 유예중인 기업이 중소기업 규모를 충족하였다가 평균매출액 증가 등으로 규모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

☑ 관련법령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시행령 제3조

3 중소기업 범위 비교(중소기업기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의 범위가 서로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

| 「중소기업기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 기준 비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업종	모든 업종	열거된 업종
규모 기준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규모기준 충족	중소기업기본법 준용
독립성 기준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을 것 • 자산총액 5천억원 + 주식 30% 직간접소유 +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 관계기업은 별표1 규모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일 것	중소기업기본법 준용 (다만, 주식소유비율 판단시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
상한 기준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좌 동
유예 기간	• 사유발생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간 (최초 1회만 적용) • 유예기간 제외 사유 - 유예기간 중인 기업과의 합병 - 독립성 기준 미충족 - 유예중인 기업이 중소기업 규모를 충족하였다가 평균매출액 증가 등으로 규모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	• 사유발생연도를 포함하여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최초 1회만 적용) • 유예기간 제외 사유 - 중소기업 외 기업과의 합병 - 유예기간 중인 기업과의 합병 - 독립성 기준 미충족 - 창업 후 2년 이내 규모기준 초과

4 2024년 중견기업 조세제도 주요 개정내용

조 문	종 전	개 정 내 용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법 제30조의6, 상증법 제71조)	• 가업요건을 갖춘 중소 및 중견기업 (매출액 5천억원 미만)이 사전 증여 시 특례세율 적용 – (세율) 10% (과세표준 60억 초과시 20%) – (사후관리) 중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 (연부연납 기간) 5년	• 저율과세 구간 확대, 사후관리 완화, 연부연납 기간 확대 – (세율) 10%(120억원 초과분은 20%) – (사후관리) 중분류 → 대분류 – (연부연납 기간) 15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법 제30조의6)	〈과세특례 적용 배제 요건 신설〉	• 조세범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배제 – (범죄행위) 가업 관련 탈세·회계부정 – (행위시기) 증여일 10년 전부터 사후관리 리간(증여 후 5년)까지의 탈세·회계부정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상증령 제15조)	• 가업상속 후 5년 간 사후의무요건 – 표준산업분류 중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사후관리 요건 신설〉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업종유지 요건 완화 – 중분류 → 대분류 –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 적용 배제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세액감면 (조특법 제104조의24)	•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로 완전복귀 또는 수도권 밖으로 부분복귀하는 경우 소득·법인세 감면 – 5년 100%+2년 50% 〈업종요건 추가〉	• 소득·법인세 감면 폭 및 기간 확대 – 7년 100%+3년 50% • 업종요건 완화 – 유턴기업 관련 위원회에서 업종 유사성 확인
국가전략기술 확대 (조특령 별표7의2)	• 7개 분야 62개 기술* * ① 반도체 22개, ② 이차전지 9개, ③ 백신 7개, ④ 디스플레이 5개, ⑤ 수소 6개, ⑥ 미래형이동수단 5개, ⑦ 바이오의약품 8개	• 7개 분야 66개 기술 – (기술) 신규 4개, 확대 1개 · (신규) 디스플레이(1개), 수소(3개) · (확대) 반도체(1개)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확대 (조특령 별표7)	• 13개 분야* 258개 기술 * ① 미래차, ② 지능정보, ③ 차세대S/W ④ 콘텐츠, ⑤전자정보 디바이스, ⑥ 차세대 방송통신, ⑦ 바이오 헬스, ⑧ 에너지·환경, ⑨ 융복합소재, ⑩ 로봇, ⑪ 항공·우주, ⑫ 첨단 소재·부품·장비, ⑬ 탄소중립	• 14개 분야 270개 기술 – (분야) 방위산업 신설 – (기술) 신규 15개, 확대 8개 · (신규) 에너지·환경(3개), 로봇(1개), 첨단소부장(5개), 탄소중립(3개), 방위산업(3개) · (확대) 미래형자동차(1개), 바이오·헬스(2개), 에너지·환경(2개), 로봇(1개), 탄소중립(2개)
근로소득증대세제 (조특령 제26의4)	•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상시근로자에 대한 임금 계산 – (적용대상) 근로소득금액, 평균임금	• 근로소득증대세제 임금 계산방법 합리화 – (적용대상) 근로소득금액

조 문	종 전	개 정 내 용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조특법 제25조의6)	• 영상콘텐츠 제작에 대한 지출비용 공제 ('25.12.31까지) – 중소 10%, 중견 7%(매출액 3천억원 미만), 그 외 기업 3% 공제 〈추가공제 신설〉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율 상향 및 추가공제 – (기본) 중소 15%, 중견 10%(매출액 3천억원 미만), 그 외 기업 5% – (추가) 중소 15%, 중견 10%, 그 외 기업 10%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 (조특법 제25조의7)	〈신 설〉	• 중소·중견기업 대상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금액 중 영상콘텐츠 비용 3% 공제 ('25.12.31까지)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제12조의4)	• 기술혁신형 M&A 시 과세특례 ('24.12.31까지) – (취득기간) 최초취득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 취득기간 확대 – (취득기간) 최초취득일부터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 최초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내 지분율 요건 충족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해외현지법인 파견 임직원 인건비 손금인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 해외현지법인 파견 임직원 인건비에 대한 손금인정 – (범위) 중소·중견기업 〈요건 추가〉	• 손금인정 범위 및 요건 개선 – (범위) 중소·중견기업→내국법인 – 파견 임직원의 근로소득세를 내국법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경우 *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고 소득세로 납부한 경우에 한정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121조의34)	〈신 설〉	• 수도권 기업의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용 부동산 처분 시까지 양도차익 소득·법인세 과세이연('26.12.31까지)
수출 중소·중견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부가가치세법 제50조의2)	• 수출 중소 및 중견기업(매출액 3천억원 미만, 수출 비중 30% 이상)은 수입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 최근 3년간 「조세범처벌법」 또는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 납부유예 적용요건 완화 – 최근 3년간→최근 2년간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관세법 제95조)	• 공장자동화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중소 70&, 중견 50% 관세 감면 ('23.12.31까지)	• 일몰연장('24.12.31까지)
기술이전·대여 과세특례 (조특법 제12조)	• 기술이전 소득 50%, 대여소득 25% 세액감면 ('23.12.31까지)	• 일몰연장('25.12.31까지)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조특법 제29조8)	•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한 중소·중견기업 대상 세액공제 ('23.12.31까지)	• 일몰연장('24.12.31까지)

조 문	종 전	개 정 내 용
고용유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30조의3)	• 고용유지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 및 위기지역 중견기업과 해당 기업근로자의 법인세 및 소득세의 일부를 공제 ('23.12.31까지)	• 일몰연장('26.12.31까지)
지주회사 설립 과세특례 (조특법 제38조의2)	•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한 주식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과세이연 ('23.12.31까지) – 분할납부 ('26.12.31까지)	• 일몰연장 – 과세이연: '26.12.31까지 – 분할납부: '26.12.31까지
연구개발 출연금 과세특례 (조특법 제10조의2)	• 연구개발출연금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출연금 수령시 익금불산입, 지출시 익금산입 ('23.12.31까지)	• 일몰연장('26.12.31까지)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관세경감 (조특법 제118조)	•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 기자재 관세감면 ('23.12.31까지)	• 일몰연장('26.12.31까지)
금융채무상환 자산매각 과세특례 (조특법 제121조의26)	•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해 3년 거치 3년 분할하여 익금 산입 ('23.12.31까지)	• 일몰연장('26.12.31까지)
채무 인수변제 과세특례 (조특법 제121조의27)	• 모법인은 채무인수변제금액을 손금산입하고, 자회사는 3년 거치 3년 분할하여 익금 산입 ('23.12.31까지)	• 일몰연장('26.12.31까지)
주주 자산양도 과세특례 (조특법 제121조의28)	• 수증법인은 증여재산가액을 3년 거치 3년 분할하여 익금산입하고, 주주는 증여자산 가액을 손금 산입 ('23.12.31까지)	• 일몰연장('26.12.31까지)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채무면제익 과세특례 (조특법 제121조의29)	•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3년 거치 3년 분할하여 익금 산입 ('23.12.31까지)	• 일몰연장('26.12.31까지)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 과세특례 (조특법 제121조의30)	•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주식 교환 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 이연 ('23.12.31까지)	• 일몰연장('26.12.31까지)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 과세특례 (조특법 제121조의31)	•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에 따라 중복자산이 발생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3년 거치 3년 분할하여 익금 산입 ('23.12.31까지)	• 일몰연장('26.12.31까지)

5 2024년 중견기업 조세제도 요약

지원제도

구분	항 목	내 용
투자 촉진	통합투자세액공제 (조특법 제24조)	• (기본공제) 사업용 자산 및 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공제 ① 일반 사업용 자산 : 중소 10%, 중견(매출 3천억원 미만) 5%, 그 외 기업 1% ② 신성장 사업화 시설 : 중소 12%, 중견 6%, 그 외 기업 3% ③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 중소 25%, 중견·그 외 기업 15% ('24.12.31.까지) • (추가공제) 투자금액이 직전 3개 연도 투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3%(국가전략기술 4%)에 대하여 추가 공제 - 단,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 금액의 2배 한도로 공제 • (임시투자세액공제) '23.12.31까지* * 2024년 경제정책방향('24.1.4) 1년 연장안 발표(확인 필요) ① 기본공제 - 일반 사업용 자산 : 중소 12%, 중견 7%, 그 외 기업 3% - 신성장 사업화 시설 : 중소 18%, 중견 10%, 그 외 기업 6% ② 추가공제 - 투자금액이 직전 3개연도 투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10%에 대하여 추가 공제(기본공제 금액의 2배 한도)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조특법 제28조의3)	• 중소·중견기업(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사업용 고정자산, 그 외 기업의 혁신성장투자자산 취득시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비를 기준내용연수의 75%(그 외 기업 50%)를 가감한 범위에서 손금 산입('21.12.31까지)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세액감면 (조특법 제104조의24, 제118조의2)	• 해외진출한 기업이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 법인세 50~100% 감면('24.12.31까지) • 해외진출한 기업이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증설하기 위해 수입신고하는 자본재의 관세 50~100% 감면('24.12.31까지)
	중소·중견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관세법 제95조)	• 공장자동화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중소 70%, 중견(매출액 3천억원 미만, 제조업) 50% 관세 감면('24.12.31까지)
	벤처기업 출자 세액공제 (조특법 제13조의2)	• 벤처기업 출자시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5%를 공제('25.12.31까지)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관세경감 (조특법 제118조)	• 중소 및 중견기업(매출액 3천억원 미만)이 수입하는 신·재생에너지 기자재에 대해 관세 50% 감면('26.12.31까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조특법 제25조의6)	• 영상콘텐츠 제작에 대한 지출비용 공제('25.12.31까지) - (기본공제) 중소 15%, 중견(매출액 3천억원 미만) 10%, 그 외 기업 5% - (추가공제) 중소 15%, 중견 및 그 외 기업 10%

구분	항 목	내 용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 (조특법 제25조의7)	• 중소·중견기업 대상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금액 중 영상콘텐츠 비용 3% 공제('25.12.31까지)
R&D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조특법 제10조)	• (신성장·원천기술) 중소 30~40%, 중견(매출액 5천억원 미만, 코스닥 상장기업) 25~40%, 그 외 기업 20~30% ('24.12.31까지) • (국가전략기술) 중소 40~50%, 중견·그 외 기업 30~40% ('24.12.31까지) • (일반 R&D 증가분) 중소 50%, 중견(매출액 5천억원 미만) 40%, 그 외 기업 25% • (일반 R&D 당기분) 중소 25%, 중견(매출액 5천억원 미만) 8~15%, 그 외 기업 최대 2%
	연구개발 출연금 과세특례 (조특법 제10조의2)	• 연구개발출연금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출연금 수령시 익금불산입, 지출시 익금산입 ('26.12.31까지)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12조)	• (기술이전) 중소 및 중견(매출액 3천억원 미만) 50% 감면 ('26.12.31까지) • (기술취득) 중소 10%, 중견 및 그 외 기업 5% 공제 ('18.12.31까지) • (기술대여) 중소 및 중견 25% 공제 ('26.12.31까지)
	기업부설연구소 용도 부동산 지방세 감면 (지특법 제46조)	• 기업부설연구소에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감면 ('25.12.31까지) ① 취득세 중소 60%, 중견 50%, 그 외 기업 35% ② 재산세 중소 50%, 중견 50%, 그 외 기업 35%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기업부설연구소는 각각 15% 추가 감면
	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기업 법인세감면 (조특법 제12조의2)	• 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25.12.31까지)
가업 승계	가업상속공제 (상증법 제18조의2)	• 가업의 요건을 갖춘 중소 및 중견기업(매출액 5천억원 미만)이 가업상속시 상속재산가액의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상증령 제15조)	•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 대상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완화 – 업종변경 제한 및 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 의무(2년) 면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법 제30조의6)	• 가업의 요건을 갖춘 중소 및 중견기업(매출액 5천억원 미만)이 가업을 사전에 증여하는 경우 과세가액 600억원 한도에서 10% 특례세율(과세표준 120억 초과하는 경우 20%) 적용 – (사후관리) 대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가업상속 상속세 연부연납 (상증법 제71조)	• 가업상속재산에 대해 거치기간 포함 최대 20년까지 상속세 납부 연장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상증법 제63조)	• 최대주주 주식에 대해 20%(중소 및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은 제외)를 할증하여 평가

구분	항 목	내 용
고용	특성화고 졸업자 복직기업 세액공제 (조특법 제29조의2)	• 특성화고 졸업자를 복직시킨 경우 지급한 인건비의 중소 30%, 중견(매출액 3천억원 미만) 15% 공제('20.12.31까지)
	경력단절 여성·육아휴직 복직자 재고용 세액공제 (조특법 제29조의3)	• (경력단절 여성)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경우 지급한 인건비의 중소 30%, 중견(매출액 3천억원 미만) 15% 공제 ('22.12.31까지) • (육아휴직 복귀) 육아휴직자를 복직시킨 경우 지급한 인건비의 중소 30%, 중견(매출액 3천억원 미만) 15% 공제 ('22.12.31까지)
	근로소득증대세제 (조특법 제29조의4)	• (근로소득증대) 임금증가분에 대해 중소 20%, 중견(매출액 3천억원 미만) 10%('25.12.31까지) • (정규직전환시) 임금증가분에 대해 중소 20%, 중견(매출액 3천억원 미만) 10%('25.12.31까지)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세제지원 (조특법 제29조의6)	•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을 통해 공제금을 수령하는 근로자의 소득세를 중소 50%, 중견(매출액 3천억원 미만) 30% 감면 ('24.12.31까지) • 중소·중견기업 납입금 손금 산입 허용
	고용증대세제 (조특법 제29조의7)	• 청년 등 상시근로자수 증가시 증가한 인원에 중소 1,100~1,300만원, 중견(매출액 3천억원 미만) 800~900만원, 그 외 기업 400~50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고, 그 외 상시근로자수 증가시 증가한 인원에 중소 700~770만원, 중견 45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24.12.31까지)
	통합고용세액공제 (조특법 제29조의8)	•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 증가한 인원에 아래 사항을 곱한 금액을 공제 ('25.12.31까지) ①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중소 1,450만원(수도권 외 1,550만원), 중견 800만원, 그 외 기업 400만원 ② (일반) 중소 850만원(수도권 외 950만원), 중견 450만원
	고용유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30조의3)	• 고용유지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 및 위기지역 중견기업과 해당 기업근로자의 법인세 및 소득세의 일부를 공제('23.12.31까지)
	해외주재원 인건비 손금 산입 (법인세법 제19조)	• 중소·중견기업이 해외법인에 파견한 주재원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하여 손금 산입 허용
구조조정·M&A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제12조의3)	• 양도가액 중 기술가치금액의 10%를 공제('24.12.31까지)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제12조의4)	• 매입가액 중 기술가치금액의 10%를 공제('24.12.31까지)

구분	항 목	내 용
구조조정·M&A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38조)	• 완전자회사는 완전모회사 주식 처분시까지 양도소득세(법인세)를 이연하고 완전모회사는 완전자회사 주식을 시가로 취득
	지주회사 설립 과세특례 (조특법 제38조의2)	• 지주회사 설립 또는 전환시 현물출자로 인한 양도차익을 지주회사 주식 처분시까지 양도소득세(법인세) 과세이연('26.12.31까지) • '24년 이후 지주회사 설립 또는 전환시 현물출자로 인한 양도차익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법인세)는 4년 거치 3년 분할납부('26.12.31까지)
	내국법인 외국자회사 주식 현물출자 과세특례 (조특법 제38조의3)	• 외국자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현물출자한 내국법인에 대해 양도일부터 4년 거치 3년 분할하여 익금 산입('21.12.31까지)
	금융채무상환 자산매각 과세특례 (조특법 제121조의26)	•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해 3년 거치 3년 분할하여 익금 산입('26.12.31까지)
	채무 인수변제 과세특례 (조특법 제121조의27)	• 모법인은 채무인수변제금액을 손금산입하고, 자회사는 3년 거치 3년 분할하여 익금 산입('26.12.31까지)
	주주 자산양도 과세특례 (조특법 제121조의28)	• 수증법인은 증여재산가액을 3년 거치 3년 분할하여 익금산입하고, 주주는 증여자산가액을 손금 산입('26.12.31까지)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채무면제익 과세특례 (조특법 제121조의29)	•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3년 거치 3년 분할하여 익금 산입('26.12.31까지)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121조의30)	•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주식 교환 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 이연('26.12.31까지)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121조의31)	•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에 따라 중복자산이 발생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3년 거치 3년 분할하여 익금 산입('26.12.31까지)
지방이전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60조)	• 공장의 지방이전을 위해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익금불산입하고 5년 거치 5년 분할하여 익금 산입('25.12.31까지)
	법인 본사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양도차익 법인세 과세특례 (조특법 제61조)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지방이전을 위해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익금불산입하고 5년 거치 5년 분할하여 익금산입('25.12.31까지)
	법인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감면 (조특법 제63조, 제63조의2)	•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법인세를 감면하고,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이연하며, 부속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의제 (이전하는 경우 '25.12.31까지, 신축하는 경우 '28.12.31까지)

구분	항 목	내 용
상생 협력 촉진	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 (조특법 제7조의4)	• 중소 및 중견기업(매출액 3천억원 미만)이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지급한 구매금액에 대해 지급기한에 따라 0.15~0.5% 공제('25.12.31까지)
	상생협력 기금출연 세액공제 (조특법 제8조의3)	• 기금 출연시 출연금의 10% 세액공제('25.12.31까지) • 자산을 무상임대하는 경우 장부가액의 3% 세액공제('25.12.31까지) • 협력 중소기업에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금액의 중소 7%, 중견(매출액 3천억원 미만) 3%, 그 외 기업 1% 공제('25.12.31까지)
기타 조세 지원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조특법 제104조의14)	• 제3자물류비용에 대해 중소 5%, 중견 3% 공제('20.12.31까지)
	수출 중소·중견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부가가치세법 제50조의2)	• 수출 중소 및 중견기업(매출액 3천억원 미만, 수출 비중 30% 이상)은 수입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특허보세구역 특례 (관세법 제176조의2, 제196조)	• 중소 및 중견기업(매출액 5천억원 미만, 자산 1조원 미만)은 보세판매장 특허수의 30% 이상 부여, 2회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특허 갱신, 특허수수료 특례

☑ 과세제도

항 목	내 용
일감몰아주기 과세 (상증법 제45조의3)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중소 50%, 중견(매출액 5천억원 미만) 40%, 그 외 30%)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일감떼어주기 과세 (상증법 제45조의4)	• 수혜법인 주주 등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 조세특례 제한

항 목	내 용
최저한세 감면배제 (조특법 제132조)	• 세금을 감면하는 경우 최소한의 세금을 내도록 하기 위한 제도 • (최저한세율) 중소 7%, 중견 1~3년차 8%, 중견 4~5년차 9%, 그 외 기업 10~17%
중복지원의 배제 (조특법 제127조)	• 동일 투자금액에 대하여 공제·감면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지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조세감면 배제 (조특법 제130조)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에 대해 조세감면 일부를 배제
이월결손금 연간 공제한도 (법인세법 제13조)	• 당해연도 소득의 80%까지만 이월결손금 공제(창업중소기업 또는 회생 계획중인 법인 100%)

Ⅱ
중견기업 관련 조세지원

(1) 투자촉진

1. 통합투자세액공제
2.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3.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4. 중소·중견기업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5.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관세경감
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7.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8.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1 통합투자세액공제

- 국내기업이 사업용 자산 및 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법인세에서 공제
- 적용기한
  ① 일반 사업용 자산 및 시설 : 기한 없음
  ② 신성장사업화시설 : 기한 없음
  ③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 2024.12.31.
  ④ 임시투자세액공제* : 2023.12.31.

* 「2024년 경제정책방향」('24.1.4), 2024.12.31.까지 1년 연장안 발표(확인 필요)

☑ 지원대상

■ 아래의 자산에 투자하는 내국인

-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토지, 건축물 제외)
- 연구·시험 및 직업훈련시설, 에너지절약 시설, 환경보전시설,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 안전시설 등의 사업용자산
-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건설업의 기계장비 등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
- 내국인이 국내에서 연구·개발하여 최초로 설정등록 받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단, 중소·중견기업이 취득하는 경우에만 허용)

■ 중견기업 기준

- 중견기업특별법상 중견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 원 미만인 기업으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않는 기업

용어설명

["소비성 서비스업"이란?]

-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숙박업 제외),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단란주점 영업 해당),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지원내용

■ (기본공제) 기업이 투자한 금액의 1~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

-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 및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의 경우 추가 공제

투자기간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 외 기업
일반 사업용 자산 및 시설		10%	5%	1%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		12%	6%	3%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25%	15%	15%
임시투자세액공제 ('23.12.31까지)	일반 사업용 자산 및 시설	12%	7%	3%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	18%	10%	6%

■ (추가공제) 해당 과세연도 투자금액이 직전 3개연도 투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3%(국가전략기술 4%)에 대하여 추가공제(단,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한도로 함)

-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경우 '23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의 10% 공제(기본공제의 2배 한도)

■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진 경우 과세연도마다 적용 가능

용어설명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이란?]

- 조특법 시행령 별표7에 따른 신성장·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로서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재부장관과 산업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
- 신성장·원천기술은 미래형자동차, 지능정보, 차세대소프트웨어 및 보안, 콘텐츠, 차세대전자정보디바이스, 차세대방송통신, 바이오·헬스, 에너지·환경, 융복합소재, 로봇, 항공·우주, 첨단소재·부품·장비, 탄소중립, 방위산업 총 14개 분야, 270여개 기술로 세부적인 기술설명은 조특법 시행령 별표7 참조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이란?]

- 조특법 시행령 별표7의2에 따른 국가전략기술(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수소)을 사업화하는 시설로서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재부장관과 산업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
- 반도체 22개, 이차전지 9개, 백신 7개, 디스플레이 6개, 수소 9개, 미래형 이동수단 5개, 바이오의약품 8개 기술로 세부적인 기술설명은 조특법 시행령 별표7의2 참조

☑ 유의사항

■ 공제 받은 자산을 투자완료일부터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액에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감면세액을 추징

☑ 절차 및 제출서류

■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시행령 제21조, 시행규칙 제12조

2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 기업의 조기투자를 유도하고자 한시적으로 가속상각 특례를 적용하여 비용처리기간을 단축시켜주는 제도
- 적용기한 : 2021.12.31

☑ 지원대상

■ 2021년 12월 31일까지 설비투자자산을 취득하는 기업

- 중소·중견기업 :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 그 외 기업 : 혁신성장투자자산 취득

■ 중견기업 기준

- 중견기업특별법상 중견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않는 기업

용어설명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 운수업 및 임대업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 어업 및 운수업에 사용되거나 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 공구, 기구 및 비품, 기계 및 장치

["혁신성장투자자산"이란?]

- 신성장사업화시설, 연구·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 에너지절약시설, 생산성향상시설

☑ 지원내용

■ 해당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중소·중견기업은 기준내용연수의 75%, 그 외 기업은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

유의사항

- 설비투자자산에 대해서 자산별·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는 이후의 과세연도에 계속하여 적용
- 본 제도를 적용받는 설비투자자산은 「법인세법」 제23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설비투자자산을 적격합병, 적격분할로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 제1호를 적용

절차 및 제출서류

- 설비투자자산을 그 밖의 자산과 구분하여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보관하고,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및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해당 설비투자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내용연수 특례적용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의3, 시행령 제25조의3

3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국내에 복귀할 경우 법인세 및 관세의 일부를 감면
• 적용기한 : 2024.12.31

☑ 지원대상

■ 법인세감면 : 국외(개성공단 포함)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장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전부 이전 또는 축소·유지하여 국내(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제외)에서 창업하거나 신설·증설하는 복귀 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 기준 이전 또는 복귀 전 사업장의 업종과 복귀 후 사업장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 또는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에서 업종유사성을 확인받은 경우 해당

- 전부 이전 : 2024년 12월 31일까지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 부터 4년 이내에 국외에서 2년 이상 운영하던 사업장을 양도 또는 폐쇄할 것
  ② 국외에서 2년 이상 경영하던 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할 것

- 부분 복귀 : 2024년 12월 31일까지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장을 부분 축소 또는 유지하면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며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
  ①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내국인으로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창업할 것
  ②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을 축소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고시에 따라 산업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로서 축소를 완료한 이후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할 것

■ 관세감면 : 조특법 제104조의24에 따라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한 자본재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기업으로 복귀 전·후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 기준 업종이 동일한 기업

지원내용

■ (법인세감면)

- 전부 이전 : 이전 후 최초로 소득(기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 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함)이 발생한 과세연도(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 그 다음 3년 이내에는 50% 감면
- 부분 복귀 : 복귀 후 최초로 소득(기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 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함)이 발생한 과세연도(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복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 내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 그 다음 3년 이내에는 50% 감면

■ (관세감면)

- 전부이전 : 관세 100% 감면
- 부분복귀 : 관세 50% 감면

유의사항

■ (법인세감면) 사업장을 이전 또는 복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폐업 또는 증설한 부분을 폐쇄하거나 해산한 경우,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하지 않은 경우,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을 축소하여 감면 받은 후 다시 확대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

■ (관세감면) 사업을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 국내로 이전 또는 복귀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 이내에 관세감면 받은 자산을 양도·대여하는 경우 감면받은 관세를 납부

절차 및 제출서류

■ (법인세감면)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관세감면) 감면신청서와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 도입물품명세확인서 등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

관련법령

■ (법인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 시행령 제104조의21

■ (관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2, 시행령 제115조의3, 시행규칙 제50조의5

4 중소·중견기업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 중소·중견 제조업체가 수입하는 공장 자동화 기계, 기구, 설비, 구성기기, 핵심부품 등에 대하여 관세의 일부를 감면
- 적용기한 : 2024.12.31

☑ 지원대상

■ 공장 자동화 기계·기구·설비(그 구성기기를 포함)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2의4에 해당하는 품목을 수입하는 중소·중견 제조업체

■ 중견기업 기준 : 중견기업특별법상 중견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영위기업

☑ 지원내용

■ 중견기업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경우 해당물품 관세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중소기업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70%, 이후에는 30%)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 외 기업
70%	50%	-

☑ 절차 및 제출서류

■ 해당물품 수입신고 수리 전에 관련서류 등을 세관장에게 제출

☑ 관련법령

■ 관세법 제95조, 시행규칙 제46조

5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관세경감

• 중소·중견기업이 수입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기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
• 적용기한 : 2026.12.31

☑ 지원대상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생산용기자재, 이용기자재 또는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기자재(그 기자재 제조용 기계 및 기구 포함)를 수입하는 중소·중견기업

■ 중견기업 기준 : 중견기업특별법상 중견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않는 기업

☑ 지원내용

■ 중소·중견기업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경우 해당물품 관세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 외 기업
50%	50%	-

☑ 유의사항

■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 이내에 신·재생에너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 경감된 관세를 즉시 징수

☑ 절차 및 제출서류

■ 해당물품 수입신고 수리 전에 관련서류 등을 세관장에게 제출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 시행규칙 제50조의4

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방송프로그램 및 영화제작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
• 적용기한 : 2025.12.31

☑ 지원대상

■ 방송프로그램 및 영화의 제작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비용 중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이 있는 「저작권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영상제작자

■ 중견기업 기준 : 중견기업특별법상 중견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않는 기업

용어설명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이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9에 따른 영상콘텐츠 제작에 참여한 사람의 인건비, 대본제작비, 배우출연료 등(단,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아 제작비용으로 지출한 금액과 광고 및 홍보비용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해 기업이 지출한 비용의 3~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영상콘텐츠가 처음으로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

- 드라마 등이 여러 과세연도 기간동안 연속하여 방송되는 경우에는 각 과세연도에 발생한 제작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 적용 가능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 외 기업
15%	10%	5%

☑ 절차 및 제출서류

■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 시행령 제22조의10, 시행규칙 제13조의9

7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금액 중 영상콘텐츠에 지출한 비용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
• 적용기한 : 2025.12.31

☑ 지원대상

■ 2025년 12월 31일까지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하는 중소·중견기업

■ 중견기업 기준 : 중견기업특별법상 중견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않는 기업

용어설명

["문화산업전문회사"란?]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21항에 따라 회사의 자산을 문화산업의 특정 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사원·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

☑ 지원내용

■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비용 중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영상콘텐츠의 최초 방송·상영 또는 제공일과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청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 외 기업
15%	10%	5%

☑ 절차 및 제출서류

■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7, 시행령 제22조의11

8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 내국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 등에 출자시 출자지분 취득가액 중 일정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
- 적용기한 : 2025.12.31

☑ 지원대상

■ 2025년 12월 31일까지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내국법인(단,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및 기금운용법인 등은 제외)

-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3에 따른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창투조합 등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용어설명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이란?]

- 해당 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
-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
- 단,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

☑ 지원내용

■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 (단, 특수관계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경우는 공제에서 제외)

☑ 유의사항

■ 출자 후 5년 이내에 피출자법인(벤처기업 등)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

☑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시행령 제12조의2

(2) R&D

1.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3.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4. 기업부설연구소 용도 부동산 지방세 감면
5.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1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
- 적용기한
  ①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 2024.12.31
  ②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 2024.12.31.
  ③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 기한 없음

☑ 지원대상

■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2024년 12월 31일까지 발생), 일반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내국인

■ 중견기업 기준 : 중견기업특별법상 중견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않는 기업

용어설명

["신성장·원천기술"이란?]

- 신성장·원천기술은 미래형자동차, 지능정보, 차세대소프트웨어, 콘텐츠, 차세대전자정보디바이스, 차세대방송통신, 바이오·헬스, 에너지·환경, 융복합소재, 로봇, 항공·우주, 첨단소재·부품·장비, 탄소중립, 방위산업 총 14개 분야, 270여개 기술로 세부적인 기술설명은 조특법 시행령 별표7 참조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란?]

- (자체연구개발)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에 해당하는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개발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원, 연구개발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않고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자와 주주인 임원은 제외)에 대한 인건비, 견본품, 부품, 원재료, 시약류 구입비, 소프트웨어·서체·음원·이미지의 대여·구입비
-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업무를 위탁(재위탁 포함)함에 따른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 제외)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용어설명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이란?]

- 반도체 22개, 이차전지 9개, 백신 7개, 디스플레이 6개, 수소 9개, 미래형 이동수단 5개, 바이오의약품 8개 기술로 세부적인 기술설명은 조특법 시행령 별표7의2 참조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란?]

- (자체연구개발)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2에 해당하는 국가전략기술(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분야) 연구개발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원, 연구개발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않고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자와 주주인 임원은 제외)에 대한 인건비, 견본품, 부품, 원재료, 시약류 구입비
-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업무를 위탁(재위탁 포함)함에 따른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 제외)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일반연구·인력개발비"란?]

-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외의 연구개발비

☑ 지원내용

■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법인세에서 공제

-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 [(20~30%) + (매출액 대비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지출액 비중* × 3배)]

  * 매출액 대비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비중은 10% 한도(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은 15%)

투자기간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 외 기업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	30~40%	25~40%	최대 20~30%

* 중견기업 기준 :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5천억원 미만, 코스닥 상장기업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 [(30~40%) + (매출액 대비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지출액 비중* × 3배)]

  * 매출액 대비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비중은 10% 한도

투자기간	중소기업	중견기업·그 외 기업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40~50%	30~40%

-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 ①, ② 중에서 선택이 원칙이나,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용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직전연도 일반연구·인력개발비용이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의 평균 일반연구·인력개발비용보다 적은 경우에는 ②방식 적용

  ① 증가분방식

  (해당 과세연도 일반연구·인력개발비 - 직전 과세연도 일반연구·인력개발비) × (25~50%)

  ② 당기분방식

  (해당 과세연도 일반연구·인력개발비) × (최대 25%)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 외 기업
			1~3년차	4~5년차	6년차 이상	
일반 연구·인력개발	증가분	50%	40%			25%
	당기분	25%	15%	10%	8%	최대 2%

* 중견기업 기준 :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5천억원 미만

☑ 유의사항

■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R&D와 일반 R&D를 동시에 수행한 인력의 인건비는 전액 일반R&D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그 외 공통되는 비용의 경우 안분하여 공제

☑ 절차 및 제출서류

■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를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 연구 및 인력개발비명세서, 연구개발계획서 등 증거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시행령 제9조, 시행규칙 제7조

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 국내기업이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받고 구분경리하는 경우 출연금 수령시에는 익금불산입, 지출하는 경우 익금산입
- 적용기한 : 2026.12.31

☑ 지원대상

■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등에 따라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받고 구분경리하는 내국인

용어설명

["연구개발출연금 등의 구분경리"란? (법인세법 제113조)]

-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자산·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
-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법인은 자산, 부채,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
- 내국법인이 분할합병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 등은 자산, 부채, 손익을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
-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합병등기일 현재 연결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을 합병(연결모법인을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 하는 분할합병을 포함)한 경우에는 자산, 부채, 손익을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을 포함)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

지원내용

■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지급받고 별도의 회계처리로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출연금 등을 익금에 불산입

■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지출한 경우 아래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

- 출연금을 연구개발비로 지출한 경우 : 해당지출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
- 출연금으로 연구개발에 사용하는 자산을 취득한 경우 : 감가상각자산은 손금에 산입하는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자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남은 잔액을 전액 익금에 산입, 이 외의 자산은 익금불산입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

유의사항

■ 익금불산입 후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해당 연구개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폐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단, 합병, 분할하여 합병법인 등이 그 금액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출연금 등 익금불산입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시행령 제9조의2, 시행규칙 제7조의3

3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을 이전·취득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에서 감면
- 적용기한 : (이전)2026.12.31, (취득)2018.12.31., (대여)2026.12.31

☑ 지원대상

- (기술이전)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및 기술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내국인(특수관계인은 제외)에게 이전한 중소·중견기업
- (기술취득) 특허권 등을 자체연구·개발한 내국인(특수관계인은 제외)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특허권 등을 취득한 기업
- (기술대여)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및 기술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대여(특수관계인은 제외)한 중소·중견기업
- 중견기업 기준 : 중견기업특별법상 중견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않는 기업

용어설명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및 기술"이란?]

-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따라 해당 기업이 국내에서 자체 연구·개발하여 최초로 설정 등록받은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 해당 기업이 국내에서 자체 연구·개발한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공업소유권,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 활동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과 관련된 기술비법은 제외)으로서 수입금액 기준 등 일정 요건을 충족
- 해당 기업이 국내에서 자체 연구·개발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로서 수입금액 기준 등 일정 요건을 충족

지원내용

■ 기술이전소득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중소·중견기업), 기술취득* 금액의 5~10%에 상당하는 금액, 기술대여소득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중소·중견기업)을 조세 지원

* 중견·대기업은 중소기업으로부터 특허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 외 기업
기술이전	50% 감면	50% 감면	-
기술취득	10% 공제	5% 공제	5% 공제
기술대여	25% 감면	25% 감면	-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시행령 제11조

4 기업부설연구소 용도 부동산 지방세 감면

- 연구개발 지원을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
- 적용기한 : 2025.12.31

☑ 지원대상

■ 2025년 12월 31일까지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기업(단,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제외)

■ 중견기업 기준 : 중견기업특별법상 중견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견기업

용어설명

["기업부설연구소"란?]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 지원내용

■ 기업부설연구소 용도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취득세 및 재산세) 일부를 감면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 외 기업**	
	취득세	재산세	취득세	재산세	취득세	재산세
①일반 기업부설연구소	60%	50%	50%		35%	
②신성장동력·원천기술 기업부설연구소	75%	65%	65%		50%	

* 중견기업 기준 :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5천억원 미만, 코스닥 상장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는 경우는 적용 제외

☑ 유의사항

■ 아래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 추징

-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1년(「건축법」에 따른 신축·증축·대수선은 2년) 이내에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 감면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심의 결과를 받지 못한 경우
-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

☑ 관련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시행령 제23조

5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이 감면대상사업장에서 생물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을 하는 경우에 법인세를 감면
- 적용기한 : 2025.12.31

☑ 지원대상

■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으로서 첨단기술기업 또는 연구소기업이 감면대상사업장에서 생물산업·정보통신산업 등 감면대상사업을 하는 기업

용어설명

["첨단기술기업"이란?]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3제1항으로 정하는 기술분야의 특허권(「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 포함) 보유 기업
  - 상기의 특허권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
  - 특구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
  - 연간 총매출액에서 연구개발비 및 제2호에 따른 생산·판매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2조의3제2항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연구소기업"이란?]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공공연구기관,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등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회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기업

["감면대상사업"이란?]

- 「생명공학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생명공학과 관련된 산업(종자 및 묘목생산업, 수산물부화 및 수산종자생산업을 포함)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과 관련된 사업

☑ 지원내용

■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감면한도 내에서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를 법인세에서 감면

용어설명

[감면한도란?]

• ①과 ②를 합한 금액이 한도

① 사업용자산 투자누계액의 50%

②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 상시근로자수 × 1천5백만원*

* 청년 상시근로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을 하는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경우 2천만원

☑ 유의사항

■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대상사업장의 사업을 폐업 또는 법인을 해산하거나, 연구개발특구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법인세 납부

☑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시행령 제11조의2, 시행규칙 제8조의3

(3) 가업승계

1. 가업상속공제
2.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3.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참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1 가업상속공제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중견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한 경우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세 공제

지원대상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중소·중견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세법상 '가업' 요건을 갖추고 경영한 기업

■ 중견기업 기준 : 중견기업특별법상 중견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상속인의 가업 외 상속재산 가액이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액의 200%를 넘지 않는 기업

적용요건

■ 피상속인 요건

- 중소·중견기업의 최대주주로서 피상속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40%(상장기업 20%) 이상을 보유
- 가업의 영위기간 10년 이상 또는 50% 이상, 또는 상속 이전 10년 중 5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표준분류 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은 합산)

■ 상속인 요건

-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단,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2년이 안되어도 가능)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

☑ 지원내용

■ 가업상속공제한도(600억원) 내에서 가업상속재산가액 전액을 공제하되,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차등 공제

- 가업영위기간 10년 이상 : 300억원, 20년 이상: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 피상속인이 2개 이상의 독립된 가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 중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이 긴 기업의 공제한도를 적용하며,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이 긴 기업의 가업상속재산가액부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순차적으로 공제

용어설명

["가업상속재산가액"이란?]

• 개인가업 :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 법인가업 :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출자지분(사업무관자산 제외)

☑ 유의사항

■ 가업상속 후 5년 간 사후의무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공제받은 금액에 사후의무 위반기간에 따른 추징율*을 곱한 금액을 산입하여 상속세 추징

* 추징율 : 5년 미만(100%)

- 일반 추징식 : 가업상속공제금액 × 기간별 추징율
- 자산 처분시 추징식 : 가업상속공제금액 × 기간별 추징율 × 자산처분비율

용어설명

["사후의무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란?]

-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한 경우
-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 ① 수증자(수증자의 배우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 ② 주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대분류 내에서 변경하거나 상증법 제49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변경을 승인하는 경우 제외)
  - ③ 가업을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단, 상속받은 주식 등을 물납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최대주주에 해당해야 함)
- 각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수 평균이 상속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수 평균(기준고용인원)의 90%에 미달하고 각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이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총급여액(기준총 급여액)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90%에 미달하고, 5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기준총급여액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 절차 및 제출서류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가업상속재산명세서 및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시행령 제15조, 시행규칙 제5조

2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경우 600억원 한도로 최대 20%의 증여세 특례세율을 적용

☑ 지원대상

■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아 가업에 종사하고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의 수증자

■ 중견기업 기준 : 중견기업특별법상 중견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 적용요건

■ 증여자 요건(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인 수증자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는 조부모)
- 증여자와 특수관계인의 주식 합계가 전체 40%(상장 20%)이상

■ 수증자 요건(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이며 거주자인 자녀
- 가업 주식을 증여받은 수증자 또는 배우자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 취임

  *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일 말일부터 3개월

지원내용

■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600억원 한도)에서 10억원을 공제한 후 10% 세율(과세표준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20%)을 적용하여 증여세 납부

- 가업승계 증여세 공제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추가공제

과세표준	세율	
	일반증여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
1억원 이하	10%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120억원 이하	50%	
120억원 초과		20%(600억원 한도)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증여재산가액은 증여기한에 관계없이 모두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하여 납부(일반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 특례적용시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이용 불가

■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요건을 갖추면 가업상속공제 이용 가능

■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주식과 일반증여재산은 합산하지 않음

■ 가업을 승계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각 증여받은 주식을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

유의사항

■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사후의무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업주식가액을 일반 증여재산으로 보고 증여세(상증세 기본세율 10~50%)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부과

용어설명

["사후의무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수증자가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승계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휴업·폐업하는 경우
  - ① 수증자(수증자의 배우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 ② 주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대분류 내에서 변경하거나 상증령 제49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변경을 승인하는 경우 제외)
  - ③ 가업을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 증여받은 주식의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 ① 증여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과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한 지분감소는 예외)
  - ② 증여받은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단, 해당법인의 시설투자·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를 하면서 수증자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실권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가 출자전환됨에 따라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져 수증자가 최대주주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
  - ③ 주식처분 및 유상증자 시 실권 등으로 수증자가 최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시행령 제27조의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시행령 제15조

참 고

[참고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 지원대상 : 18세 이상 거주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토지, 건물 등을 제외한 창업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 지원내용 : 창업자금에 대해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 공제, 10% 특례세율
  (한도 : 증여세 과세가액 50억원 한도(10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 100억원))
- 지원요건 : 증여받은날부터 2년 이내 창업, 4년 후까지 창업자금을 해당목적에 사용

3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 상속세와 증여세의 연부연납은 원칙적으로 10년이나, 가업상속공제를 받았거나, 중소·중견기업 상속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 납부를 거치기간 포함 최대 20년까지 연장해주는 제도

☑ 적용요건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
- 과세표준 신고기한 또는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
- 납세담보제공

☑ 지원내용

■ 중소·중견기업 상속재산인 경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2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부터 10년

■ 그 밖의 상속재산인 경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

■ 증여세의 경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세목		연부연납기간 (2008.1.1 이후 상속·증여분)
상속세	가업상속재산	20년 납부 또는 10년 거치 후 10년 납부
	일반상속재산	10년간 분할납부(거치기간 없음)
증여세		15년간 분할납부(거치기간 없음)

■ 연부연납 가능 금액

$$\text{상속세 납부세액} \times \frac{(\text{가업상속재산가액} - \text{가업상속공제금액})}{(\text{총 상속재산가액} - \text{가업상속공제금액})}$$

☑ 유의사항

■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연부연납과 관계되는 세액 전액 또는 일부를 징수

- 연부연납세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담보변경, 담보보전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연부연납기한까지 연부연납세액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상속받은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상속인이 사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① 상속재산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단, 상증법 시행령 제15제8항제1호의 경우 제외)
  ② 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해당 사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 없는 경우 포함)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④ 해당 상속인이 최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절차 및 제출서류

■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연부연납 신청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시행령 제67조, 제68조, 국세징수법 제14조

참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 상속·증여재산가액 평가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에 대해 주식평가액에 일정률을 할증하여 평가

적용대상

■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주식

(중소기업 및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제외)

- 단,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및 제29조 등에 따른 이익계산 등은 주식·출자지분 평가방법 적용시 할증평가 제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

용어설명

["주식·출자지분 평가방법"이란?]

• 상장주식 :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일별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 비상장주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

할증률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 등에 대해서 할증률 20%(중소기업 0%)를 가산

- 지분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 등을 합산

구분	중소기업	그 외 기업
할증율	0%	20%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시행령 제52조의2, 제53조

(4) 고용촉진

1. 특성화고 등 졸업자 병역 이행 후 복직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 경력단절 여성·육아휴직 복직자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3. 근로소득증대세제
4.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대한 세제지원
5.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6. 통합고용세액공제
7.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8. 해외주재원 인건비 손금 산입

1 특성화고 등 졸업자 병역 이행 후 복직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이 지급한 인건비에 대하여 법인세에서 공제
- 적용기한 : 2020.12.31

☑ 지원대상

■ 2020년 12월 31일까지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의 졸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자를 복직(병역 이행 후 1년 이내에 복직된 경우만 해당)시킨 중소·중견기업(중견기업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복직만 적용)

■ 중견기업 기준 : 중견기업특별법상 중견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않는 기업

용어설명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자란?]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를 졸업한 날부터 2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이란?]

-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제24조·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의무소방원 포함)
- 「병역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 「군인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 지원내용

■ 중견기업이 해당 복직자에게 복직일 이후 2년 이내에 지급한 인건비의 15%(중소기업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

☑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2, 시행령 제26조의2, 시행규칙 제61조

2 경력단절 여성·육아휴직 복직자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하거나 육아휴직자를 복직시킨 경우 기업이 지급한 인건비에 대하여 법인세에서 공제
- 적용기한 : 2022.12.31

☑ 지원대상

■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력단절 여성과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육아휴직자를 복귀시킨 중소·중견기업

■ 중견기업 기준 : 중견기업특별법상 중견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

용어설명

["경력단절여성"이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

- 해당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동일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기준)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 결혼·임신·출산·육아 및 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하였을 것
- 해당 기업에서 퇴직한 날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육아휴직 복귀자"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

-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한 경우로서 육아휴직 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일 것
-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지원내용

■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 중견기업이 해당 복직자에게 복직일 이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 인건비의 15%(중소기업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 외 기업
30%	15%	-

■ (육아휴직자 복직)

- 중견기업이 해당 육아휴직 복귀자에게 복직일 이후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 인건비의 15%(중소기업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
- 단, 해당 중소· 중견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에서 제외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 외 기업
30%	15%	-

유의사항

■ 육아휴직 복귀자로 인해 공제를 받은 기업이 해당 기업에 복직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육아휴직 복귀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공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 시행령 제26조의3, 시행규칙 제61조

3 근로소득증대세제

• 근로자 임금을 증가시킨 기업의 근로자 임금증가분에 대해 법인세를 공제
• 적용기한 : 2025.12.31

☑ 지원대상

■ 아래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상시근로자의 평균 임금증가율이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보다 큰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많거나 같은 기업
-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과세연도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는 경우로서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많거나 같은 기업

■ 중견기업 기준 : 중견기업특별법상 중견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않는 기업

용어설명

["상시근로자"란?]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여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②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이 1억2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③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근로자
④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근로자
⑤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
⑥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용어설명

["정규직 전환근로자"란?]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① 직전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매월 분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될 것

② 해당 과세연도 중에 비정규직 근로자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 전환하였을 것

③ 직전 과세연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임원, 근로소득금액이 7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친족관계가 아닐 것

☑ 지원내용

■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해 3년 평균 초과 임금 증가분의 5~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 외 기업
20%	10%	5%

■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는 경우,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분의 5~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 외 기업
20%	10%	5%

용어설명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이란?]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1+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증가분"이란?]

• [해당 과세연도 임금 합계액 - 직전 과세연도 임금 합계액]

☑ 유의사항

- 정규직 전환으로 인해 공제를 받은 경우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년까지 기간 중 해당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를 종료한 근로자 수에 비례하는 감면분을 추징

☑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4, 시행령 제26조의4, 시행규칙 제14조의2

4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대한 세제지원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을 통해 공제금을 수령하는 근로자의 소득세를 감면하고 기업이 납입하는 기여금을 손금에 산입
- 적용기한 : 2024.12.31

☑ 지원대상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고 납입한 중소·중견기업 및 5년 이상 납입한 후 공제금을 수령하는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중소·중견기업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 만기납입 후 핵심인력 대상 공제사업에 연계하여 납입하는 경우 기간 합산)

■ 중견기업 기준 : 중견기업특별법상 중견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않는 기업

용어설명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란?]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및 인력양성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2)

[성과보상기금의 재원]

-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이 납부하는 공제납입금
-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차입금
- 성과보상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 중소기업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 지원내용

■ (근로자)

- 수령금 중 기업 기여금으로 발생한 금액에 대해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소득세액 감면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 외 기업
청년	90%	50%	-
그 외 근로자	50%	30%	-

■ (중소·중견기업)

- 중소·중견기업이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공제금에 대해 손금 산입

☑ 절차 및 제출서류

■ 원천징수의무자(기업)가 감면 대상 명세서를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 시행령 제26조의 6,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2~제35조의5,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0호

5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고용이 증가된 기업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
• 적용기한 : 2024.12.31

☑ 지원대상

■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전년보다 증가한 내국인(단, 소비성 서비스업 제외)

■ 중견기업 기준 : 중견기업특별법상 중견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않는 기업

☑ 지원내용

■ 기업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한 인원수에 일정금액을 곱한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중소·중견기업 : 3년*, 그 외 기업 : 2년)

* 고용인원이 유지되는 경우 고용이 증가한 다음 해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하며 청년 등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면 그 외 상시근로자 수의 증가로 공제받은 금액(조특법 제29조의7제1항제2호에 따른 공제)만 공제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 외 기업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①청년정규직, 장애인 등 ('21~'22년)	1,100만원	1,300만원	800만원	900만원	400만원	500만원
①청년정규직, 장애인 등 ('23~'24년)	1,100만원	1,200만원	800만원		400만원	
② ①을 제외한 상시근로자	700만원	770만원	450만원		-	

용어설명

["청년 등 상시근로자"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5 제3항의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연령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

☑ 유의사항

■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각 과세연도의 청년등 상시근로자수 또는 전체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한 경우 공제받은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

- ①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수 또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최초 공제연도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적용(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하여는 추징 제외)
- ② ①에 해당하는 기업이 다음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수 등이 증가하여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감소하지 않은 경우,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년(중소·중견기업 3년)간 증가한 인원수에 일정금액을 곱한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각종 투자 세액공제 등과 중복 적용 허용

☑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시행령 제26조의7, 시행규칙 제61조

6 통합고용세액공제

•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
• 적용기한 : 2025.12.31

지원대상

■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여성 등의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증가한 내국인(단, 소비성 서비스업 제외)

■ 2023년 6월 30일 고용하고 있는 아래의 근로자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또는 직접 고용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중소·중견기업 (단,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 적용하지 않으며,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특수관계인은 제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 2025년 12월 31일까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육아휴직자를 복직시킨 중소·중견기업

-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한 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일 것
-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중견기업 기준 : 중견기업특별법상 중견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않는 기업

☑ 지원내용

■ 기업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한 인원수에 일정금액을 곱한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 외 기업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① 청년정규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	1,450만원	1,550만원	800만원		400만원	
②①을 제외한 상시근로자	850만원	950만원	450만원		-	
③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1,300만원		900만원		-	
④ 육아휴직 복귀자	1,300만원		900만원		-	

☑ 유의사항

■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일 또는 육아휴직 복직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

☑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시행령 제26조의8, 시행규칙 제61조

7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고용을 유지한 기업 및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적용기한 : 2026.12.31

☑ 지원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과 해당 기업 근로자

-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이 전년 대비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 대비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경우
- 중견기업의 경우 위기지역 내 사업장이 소재할 것

■ 중견기업 기준 : 중견기업특별법상 중견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소비성 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않으면서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위기지역에 소재할 것)

용어설명

["위기지역"이란?]

•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제32조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지원내용

■ (기업) 2026년 12월 31일까지 ①과 ②를 합산한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

- ①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10%
- ②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 105%) × 해당 과세연도 전체 상시근로자의 근로시간 합계 × 15%

■ (근로자) 2026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금액을 소득세에서 공제(1천만원 한도)

- (직전 과세연도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해당 근로연간 임금총액)× 50%

☑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 및 사업주·근로자대표간 합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3, 시행령 제27조의3, 시행규칙 제61조

8 해외주재원 인건비 손금 산입

• 중소·중견기업이 해외법인에 파견한 주재원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하여 손금 산입 허용

☑ 지원대상

■ 출자관계가 있는 해외법인(100% 출자한 법인에 한정)에 주재원을 파견하여 인건비를 지급한 중소·중견기업

■ 중견기업 기준 : 중견기업특별법상 중견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소비성 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않으면서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

☑ 지원내용

■ 중소·중견기업이 해외법인에 파견한 주재원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하여 손금 산입 허용

- 해당 해외주재원에게 지급된 인건비 총액의 50% 미만으로 지급한 경우로 한정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시행령 제19조

(5) 구조조정·M&A

1.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2.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3.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4.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5. 내국법인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6.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1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 내국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게 지급한 양도가액 중 일정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
- 적용기한 : 2024.12.31

☑ 지원대상

■ 2024년 12월 31일까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합병한 내국법인(단, 특수관계인과의 합병은 제외)

-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 양도가액이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순자산 시가의 1.3배 이상일 것
- 피인수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합병등기일부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합병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
-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용어설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란?]

- 합병등기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 합병등기일까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가 매출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
- 합병등기일까지 아래 어느 하나의 인증 또는 이와 유사한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②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보건신기술 인증
  ③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
  ④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선정 등
  ⑥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인증

☑ 지원내용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게 지급한 양도가액 중 기술가치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

용어설명

[양도가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금액으로 적격합병과 그 외의 경우를 다르게 산출

[기술가치금액 : 다음 금액 중 합병법인이 선택한 금액]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병등기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특허권 등을 평가한 금액의 합계액(단, "양도가액-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를 한도로 함)

• 양도가액 –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 × 1.3배)

☑ 유의사항

■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이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동안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법인세 납부

-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파산하거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는 제외)

☑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와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3, 시행령 제11조의3

2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매입가액 중 기술가치금액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
• 적용기한 : 2024.12.31

☑ 지원대상

■ 2024년 12월 31일까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취득한 내국법인

-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주식 등을 최초 취득한(최초취득일) 날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간의 취득일 것
- 인수법인이 최초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내 또는 최초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피인수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최대출자자로서 피인수법인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는 30%)를 초과하고, 인수법인이 해당 주식 등을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기준충족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 인수법인이 최초취득일부터 기준충족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취득한 주식 등의 매입가액이 다음과 같을 것

  : 매입가액 ≧ (취득일 현재 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 × 1.3) × 지분비율
- 피인수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해당 주식등을 양도한 날부터 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인수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피인수법인이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종전에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

☑ 지원내용

■ 매입가액 중 기술가치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충족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

용어설명

[기술가치금액 : 다음 금액 중 인수법인이 선택한 금액]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피인수법인이 보유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허권 등을 평가한 금액의 합계액에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단, "매입가액 – (피인수법인 순자산시가 × 지분비율)"을 한도로 함)
- 매입가액 – [(피인수법인 순자산시가 × 1.3배) × 취득일 현재의 지분비율]

☑ 유의사항

■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이 5년 이내 범위에서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동안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법인세 납부

- 피인수법인의 주주 등이 인수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 피인수법인이 종전에 영위하던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단, 피인수법인이 파산하거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는 제외)
-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인수법인의 피인수법인 지분비율이 취득일 현재 지분비율보다 낮아지는 경우, 단,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우리사주 취득,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창투조합등이 출자하는 경우로 인해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는 제외

☑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와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 시행령 제11조의4

3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내국법인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에 따라 완전자회사로 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완전자회사 주주가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이연

☑ 지원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상대방 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내국법인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 간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일 것(다만,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신설되는 완전모회사는 제외)
-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로부터 교환·이전대가를 받은 경우 그 교환·이전대가의 총합계액 중 완전모회사 주식의 가액이 80% 이상이거나 완전모회사의 완전모회사 주식의 가액이 8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에 따라 배정되고, 완전모회사 및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취득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 완전자회사가 교환·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할 것

☑ 지원내용

■ (완전자회사) 완전자회사 주주가 완전모회사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완전자회사 주식양도차익을 손금 산입하고 양도차익으로 인해 발생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이연

- 손금산입시 산식 : (①-②)금액을 손금에 산입,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
  ① 완전모회사등 주식의 가액, 금전, 재산가액합계액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으로 양도한 완전자회사의 주식의 취득가액을 뺀 금액
  ② ①의 금액과 교환·이전의 대가로 받은 완전모회사의 주식 외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중 작은 금액
- (완전모회사) 완전자회사 주식을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취득

☑ 유의사항

■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완전자회사가 사업을 폐지하거나, 완전모회사 또는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포괄적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

-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개인인 경우 : 해당 사유가 발생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연 받은 세액을 납부
-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법인인 경우 :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익금엔 산입하고 남은 잔액을 익금 산입

☑ 절차 및 제출서류

■ 완전자회사의 주주는 완전모회사와 함께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과세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완전모회사는 자산조정계정명세서 및 완전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시행령 제35조의2

4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전환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인한 양도차익을 지주회사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이연('26년 12월 31일까지), 이후 출자시 금융투자소득세 또는 법인세 4년 거치 3년 분할납부
• 적용기한 : 2026.12.31

☑ 지원대상

■ 2026년 12월 31일까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식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

- 지주회사 및 현물출자를 한 주주(현물출자등의 대상이 된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5항에 해당하는 주주 등)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 현물출자로 인하여 자회사로 된 내국법인이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할 것
- 전환지주회사 주식소유비율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정한 비율 미만인 지분비율미달 자회사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을 교환하는 것
  ① 전환지주회사가 될 당시 해당 전환지주회사가 출자하고 있는 다른 내국법인
  ② 전환지주회사의 분할로 신설, 합병되는 법인 및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
- 전환지주회사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과 교환하는 것
- 자기주식교환의 경우에는 지분비율미달 자회사의 모든 주주가 그 자기주식교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였을 것

☑ 지원내용

■ ('26.12.31까지)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해당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 이연(주식양도차익을 손금에 산입할 때 해당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

■ ('24.1.1부터~'26.12.31까지)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양도차익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 이연받거나 분할납부

- 내국법인 :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불산입하고 이후 3개 사업연도에 균분하여 익금 산입
- 거주자 :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부터 3년간 균분하여 양도소득세 납부

☑ 유의사항

■ 현물출자 등을 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아래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면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양도차익 또는 납부하지 않은 양도소득세 전액에 대해 해당 과세연도 익금에 산입하거나 납부

-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법령 개정으로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분비율 미달자회사의 주식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정한 비율 미만으로 소유하는 경우
- 자회사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 현물출자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와 함께 현물출자 등 과세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시행령 제35조의3, 제35조의4

5 내국법인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외국법인을 설립하거나 이미 설립된 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양도차익을 4년 거치 3년 분할로 익금에 산입
• 적용기한 : 2021.12.31

☑ 지원대상

■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기업 중 2021년 12월 31일까지 외국자회사(내국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2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외국법인을 설립하거나 이미 설립된 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한 내국법인

☑ 지원내용

■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외국자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양도일부터 4년을 거치하고 3년간 분할하여 익금에 산입

☑ 유의사항

■ 양도차익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 중 양도한 주식 등의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

■ 내국법인 또는 현물출자받은 외국법인이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 단, 아래와 같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내국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로 생기는 합병법인,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해당 내국법인의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 등을 승계하는 경우
-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 주식 등을 현물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외국법인의 주식 등을 1개월 이내에 다른 외국법인에 다시 현물출자하는 경우

☑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주식 등 현물출자 양도차익명세서 및 손금산입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3, 시행령 제35조의5

6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발적으로 구조 조정시 세제지원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과 연계하여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에 대해 세제지원
- 적용기한 : 2026.12.31

☑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 (지원대상) 채무 상환 및 투자 내용이 포함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내국법인

-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 중 일정액을 양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무를 상환하거나 1년 이내에 투자를 집행한 법인

■ (지원내용)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해 법인세 과세를 3년 거치하고 이후 3년 분할하여 익금 산입

■ (유의사항) 채무 상환 또는 투자를 진행하지 않거나, 자산 양도 후 3년 이내 기준부채비율을 초과한 부채비율 보유, 투자로 취득한 자산의 4년 이내 처분, 폐업 및 해산, 사업재편계획 승인 취소 등이 발생할 경우 익금에 산입하고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6, 시행령 제116조의30

☑ 채무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 (지원대상) 채무 인수·변제 계획이 포함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내국법인

-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모회사 소유 자회사 지분(특수관계인 지분 포함)을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전부 양도하고, 자회사의 금융기관 채무를 인수·변제한 법인

■ (지원내용)

- (모회사) 자회사 채무변제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모회사 법인세 감면
- (자회사)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3년 거치하고 이후 3년 분할하여 익금 산입, 자회사의 다른 주주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7, 시행령 제116조의31

☑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 (지원대상) 양도대금을 금융기관 부채 상환에 전액 사용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내국법인

-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주주 또는 출자자로부터 자산의 양도대금을 수증하고, 수증받은 자산의 양도대금 또는 자금을 전액 채무상환에 사용한 법인

■ (지원내용)

- (수증법인) 자산수증이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3년 거치하고 이후 3년 분할하여 익금 산입
- (주주 등) 증여자산가액을 손금 산입하여 법인세 감면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8, 시행령 제116조의32

☑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 (지원대상)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내국법인 및 금융채권자

■ (지원내용)

- (채무면제법인) 채무면제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3년 거치하고 이후 3년 분할 익금산입
- (금융기관) 면제한 채무금액을 손금산입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9, 시행령 제116조의33

☑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 (지원대상) 지배주주 등의 주식 등 양도·양수계획이 명시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내국법인

-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내국법인(교환대상법인)의 지배주주(특수관계인 포함) 주식 등 전부를 양도하고, 다른 내국법인(특수관계인 아님)의 주식 등을 양수하는 지배주주 및 출자자

■ (지원내용)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 이연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0, 시행령 제116조의34

☑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 (지원대상) 합병당사법인의 합병계획이 명시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내국법인

-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동일 업종간 합병(분할합병 포함)하여 중복자산이 발생된 경우, 합병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중복자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으로 새로운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한 법인

■ (지원내용) 합병 이후 중복자산 처분시 양도대금 중 신규자산 취득 비율만큼 중복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3년 거치하고 이후 3년 분할하여 익금 산입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1, 시행령 제116의35

(6) 지방이전

1.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2. 법인의 본사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양도차익 법인세 과세특례
3. 법인의 공장·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4.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1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대도시에 있는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익금불산입
- 적용기한 : 2025.12.31

지원대상

■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대도시 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내국법인(단, 이전 전과 후의 공장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세분류)이 같아야 함)

-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 대도시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방에서 기존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 대도시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지방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용어설명

["대도시"란?]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부산광역시(기장군 제외),대구광역시(달성군 제외),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관할구역.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는 제외

["공장"이란?]

- 제조장 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사업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

☑ 지원내용

■ 아래의 금액에 대해서 익금불산입하고, 5년 거치 5년 분할하여 익금에 산입(단, 양도차익에서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 한함)

- 익금불산입 금액 계산식 = {(양도가액-당해 공장의 장부가액-양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월결손금)}×(이전 공장 건물 등 투자비용/대도시공장 양도가액)

☑ 유의사항

■ 익금불산입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지방공장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업을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 익금불산입액을 익금에 산입

■ 이전계획서상의 예정가액에 의한 익금불산입액이 실제 익금불산입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익금에 산입

☑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토지 등 양도차익명세서, 이전완료보고서 또는 이전계획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시행령 제54조, 제56조,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

2 법인의 본사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양도차익 법인세 과세특례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익금불산입
- 적용기한 : 2025.12.31

지원대상

■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내국법인(단, 이전 전후의 공장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상세분류)이 같아야 함)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용어설명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란?]

-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및 시행령 별표1에 의한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수도권 지역

① 서울특별시
②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제외)
③ 의정부시 ④ 구리시 ⑤ 하남시 ⑥ 고양시 ⑦ 수원시 ⑧ 성남시 ⑨ 안양시
⑩ 부천시 ⑪ 광명시 ⑫ 과천시 ⑬ 의왕시 ⑭ 군포시 ⑮ 시흥시(반월특수지역제외)
⑯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도농동에 한함)

☑ 지원내용

■ 아래의 금액에 대해서 익금불산입하고, 5년 거치 5년 분할하여 익금에 산입
(단, 양도차익에서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 한함)

- 익금불산입 금액 계산식 = {(양도가액-당해 공장의 장부가액-양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월결손금)} × (이전 본사 건물 등 투자비용/수도권 본사 양도가액)

☑ 유의사항

■ 익금불산입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

-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지 않은 경우
- 본사 이전 3년 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이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의 50% 이상인 경우
- 대지와 건물을 처분한 대금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본사 대지와 건물을 취득·임차 또는 본사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본사의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토지 등 양도차익명세서에 이전완료보고서 또는 이전계획서, 처분대금사용계획서 또는 처분대금사용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1조, 시행령 제57조

3 법인의 공장·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법인의 공장·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해서 법인세 등을 감면
• 적용기한 : (공장·본사 이전) 2025.12.31, (공장·본사 신축) 2028.12.31

☑ 지원대상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거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춰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2028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밖에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는 경우(이전 전과 후의 공장 또는 본사의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세분류)이 같아야 하며,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을 양도하거나 공장시설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일 것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부터 2028년 12월31일까지 수도권 밖에서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부지를 취득하고 2028년 12월 30일까지 사업을 개시할 것
-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외의 용도로 전환할 것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한 날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밖에서 사업을 개시하거나 본사를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부지를 취득하고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할 것
-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 투자금액 10억원 이상, 근무인원이 20명 이상일 것

☑ 지원내용

■ (세액감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7년간 100%, 그 이후 3년간 50% 법인세 감면(지방이전 후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사업을 승계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외)

-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 단, 지방 중에서도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위기지역 또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7년)

■ (분리과세대상 토지의제특례) 이전 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5년간 분리과세 대상으로 의제(단, 공장을 이전한 경우만 해당)

용어설명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 구미시, 김해시, 전주시, 제주시, 진주시, 창원시, 청주시 및 포항시의 관할 구역

["분리과세대상"이란?]

• 특정소득을 종합과세에서 분리하여 소득지급시마다 특정세율(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별도로 과세. 소득세율이 누진세율인 점을 감안하면 분리과세로 인해 조세부담은 완화

☑ 유의사항

■ 법인세를 감면받은 지방이전법인이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납부

-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단, 합병·분할, 분할합병은 제외)
-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 수도권에 본사 또는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생산공장을 설치한 경우
- 이전본사 근무 임원 수가 수도권의 본사 근무 임원과 이전본사 근무 임원의 합계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에 미달하는 경우

■ 분리과세대상적용 토지로 적용받은 법인이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액 및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

-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단, 합병·분할, 분할합병은 제외)
-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 수도권에 본사 또는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생산공장을 설치한 경우

☑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63조의2, 시행령 제54조, 제60조, 제60조의2

4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기 위해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익금불산입
• 적용기한 : 2026. 12. 31.

☑ 지원대상

■ 수도권에서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

■ 2024.1.1. 이후 수도권 내 사업용 부동산을 2026.12.31.까지 양도하는 내국법인

-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내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 수도권 내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 지원내용

■ 수도권 기업의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용 부동산 처분 시까지 양도차익 소득·법인세 과세이연

■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 대상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완화

- 업종변경 제한 및 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 의무(2년) 면제

용어설명

["기회발전특구"란?]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지원,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

* 인구감소지역·접경지역이 아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제외

☑ 유의사항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익금불산입액을 익금에 산입 또는 양도소득세 납부

-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
- 사업용 부동산을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지 않은 경우
-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용 부동산 중 처분하거나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의 가액이 전체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용 부동산 가액의 50% 이상인 경우

☑ 절차 및 제출서류

■ 수도권 내 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차익명세,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및 이전(예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4, 시행령 제116조의37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7) 상생협력 촉진

1.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2.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시 세액공제

1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기업이 상생결제제도를 통하여 지급한 구매대금에 대하여 법인세에서 공제
• 적용기한 : 2025.12.31.

☑ 지원대상

■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 해당 과세연도에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하지 아니할 것

■ 중견기업 기준 : 중견기업특별법상 중견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않는 기업

용어설명

["상생결제제도"란?]

•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결제방법

①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으로부터 판매대금으로 받은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다른 판매기업에 새로운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여 구매대금을 지급할 것

② 여러 단계의 하위 판매기업들이 구매기업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과 동일한 금리조건의 외상매출채권으로 판매대금을 지급할 것

③ 외상매출채권의 지급기한이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일 것

④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될 것

☑ 지원내용

■ 중소·중견기업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에 대해 아래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모두 합산한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단, 공제금액은 해당과세연도 법인세의 10% 한도)

-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15일 이내일 경우: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 0.5%
-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15일 초과 30일 이내일 경우: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 0.3%
-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30일 초과 60일 이내일 경우: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 0.15%

☑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시행령 제6조의4

2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시 세액공제

• 상생협력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
• 적용기한 : 2025.12.31

지원대상

■ (기금출연기업)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또는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9호에 따라 상생협력을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연을 하는 내국법인(단,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출연을 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소기업,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업협력재단(농어촌상생협력 기금 포함)에 출연하는 경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거나 상생중소기업 간에 공동으로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단, 해당 내국법인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은 제외)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제8항에 따른 공동사업지원자금에 출연하는 경우

■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기업) 협력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구·시험용 자산 등 유형고정자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내국법인(단,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상임대를 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시설설치기업)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탁·위탁거래의 상대방인 수탁기업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검사대 또는 연구시설을 투자(무상임대 제외)하는 내국법인

☑ 지원내용

- (기금출연기업) 해당 출연금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
- (무상임대기업) 유형고정자산 장부가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상임대를 개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
- (시설설치기업) 기업이 협력 중소기업에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투자한 금액의 1~7%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 외 기업
7%	3%	1%

☑ 유의사항

- 해당 출연금을 회계처리할 때에는 다른 자금과 구분경리
- 무상임대 개시일 이후 5년 이내에 해당 유형고정자산의 무상임대를 종료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

☑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시행령 제7조의2

(8) 기타 조세지원

1.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2. 수출 중소·중견기업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3. 특허보세구역의 특례

1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제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연도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
• 적용기한 : 2020.12.31

☑ 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을 초과하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중소·중견기업

-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전체 물류비용의 30% 이상일 것
-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낮아지지 아니할 것

※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의 30% 미만이거나 없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의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

■ 중견기업 기준 : 중견기업특별법상 중견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않는 기업

☑ 지원내용

■ 초과금액의 3%(중소기업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단, 공제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의 10% 한도)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 외 기업
5%	3%	0%

☑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시행령 제104조의14

2 수출 중소·중견기업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 중소·중견기업이 수입하는 원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

☑ 지원대상

■ (대상기업) 직전 사업연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중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상인 중견기업(중소기업은 수출액 비율이 30%이상이거나 수출액 50억원 이상)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였을 것
- 최근 2년간 국세(관세 포함)를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
- 최근 3년간 「조세범처벌법」 또는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최근 2년간 부가가치세 납부유예가 취소된 사실이 없을 것

■ (대상재화) 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한 원재료 등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재화(단,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과 관련된 재화는 제외)

■ 중견기업 기준 : 중견기업특별법상 중견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영위기업

☑ 지원내용

■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미리 신청하는 경우, 해당 재화를 수입할 때 납부 유예

☑ 절차 및 제출서류

■ 신고기한확인서와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신청서를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

☑ 유의사항

■ 부가가치세 납부가 유예된 사업자가 국세를 체납하는 등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유예를 취소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50조의2, 시행령 제72조, 제91조의2

3 특허보세구역의 특례

• 보세판매장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해 특허수, 특허갱신, 특허수수료에 대해 특례 적용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중 3년 평균 매출액 5천억원 미만 기업이면서 자산총액 1조원 미만 기업

■ 중견기업 기준 : 중견기업특별법상 중견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자산총액이 1조원 미만인 기업(단, 자산총액 1조원 이상 법인이 주식의 3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최다출자자인 기업은 제외)

☑ 지원내용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게 보세판매장 총 특허수의 30%(2017년 12월 31일까지는 20%) 이상의 특허 부여

■ 입국장 보세판매장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에게만 특허 부여

■ 중소·중견기업은 2회, 그 외 기업은 1회에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특허를 갱신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특허수수료는 매출액의 0.01% (그 외 기업 0.1%~1%)

☑ 절차 및 제출서류

■ (특허 신청) 특허보세구역의 종류, 설치 및 운영 기간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세청에 공고된 신청 기간에 세관장에게 제출

■ (특허 갱신) 갱신사유, 갱신기간 등에 대한 서류를 첨부하여 기간만료 6개월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

☑ 관련법령

■ 관세법 제176조의2, 관세법 제196조, 시행령 제192조의2~7

Ⅲ
중견·대기업 과세제도

중견·대기업 과세제도

1. 일감몰아주기 과세
2. 일감떼어주기 과세

1 일감몰아주기 과세

• 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자녀 등)가 소유한 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준 경우 수혜법인 지배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과세

☑ 적용대상

■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법인

■ 중견기업 기준 : 중견기업특별법상 중견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5천억원 미만이면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에 소속되지 않은 기업

☑ 과세요건

■ 아래의 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 대해 과세

-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및 매출액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것
  ①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중소 50%, 중견 40%, 그 외 기업 30%)을 초과
  ② 대기업의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의 2/3(20%)를 초과하면서 거래금액이 1,000억원을 초과
  ③ 일감몰아주기 과세 또는 공정거래법상 규제(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 간의 담합에 의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해 발생한 수혜법인의 매출액 포함
- 지배주주와 그 친족 주식보유비율이 한계보유비율(중소·중견 10%, 그 외 기업 3%)을 초과할 것

용어설명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란?]

•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의 거래로 얻는 매출액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간의 교차거래 등으로 발생한 매출액을 포함

["공시대상기업집단 간의 교차거래 등으로 발생한 매출액"이란?]

•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를 회피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 간에 계약·협정 및 결의 등에 따라 제3자 혹은 둘 이상의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발생한 수혜법인의 매출액

☑ 과세제외매출액

- 중소기업간 거래
-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 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 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지주회사인 경우로서 자회사, 손자회사와 거래한 매출액
-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으로 한정)
- 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 운영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광고매출액
- 수혜법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운영하는 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국가등이나 국가재정법에 따라 설립된 기금 또는 공공기금이 100%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50% 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출자한 경우 해당 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 증여의제이익 계산

- 중소기업 :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50%) × (주식보유비율 − 10%)
- 중견기업 :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20%) × (주식보유비율 − 5%)
- 그 외 기업 :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5%) × (주식보유비율)

☑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 수혜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시행령 제34조의3, 시행규칙 제10조의8

2 일감떼어주기 과세

•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수혜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

☑ 적용대상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수혜법인(지배주주와 친족의 주식보유 비율이 30% 이상인 법인)

- 단,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이상인 법인 및 중소기업은 제외

☑ 차액납부 및 환급

■ (차액납부) 개시사업연도부터 사업기회제공일 이후 2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정산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세액과 납부한 증여세액(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세액)과의 차액을 납부

■ (환급) 정산증여의제이익이 당초 증여의제이익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환급

용어설명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란?]

•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특수관계가 아닌 법인이 수행하고 있던 사업기회를 임대차계약, 입점계약, 대리점계약 및 프랜차이즈 계약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 약정

[증여의제이익 계산식]

•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개시사업연도의 수혜법인의 이익 ×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 개시사업연도분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 개시사업연도의 월 수 × 12] × 3년

* 주식보유비율은 개시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적용

*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부터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 배당소득상당액을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

["정산증여의제이익"이란?]

• 수혜법인이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해 발생한 실제이익을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

☑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 수혜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 시행령 제34조의4

Ⅳ
조세특례 제한

조세특례 제한

1. 최저한세에 따른 감면배제
2. 중복지원의 배제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4. 이월결손금 연간 공제한도

1 최저한세에 따른 감면배제

• 조세특례제도를 이용하여 세금을 감면하여 주는 경우에도 세부담의 형평성, 세제의 중립성, 국민개납, 재정확보 측면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최소한의 세금을 내도록 하기 위한 제도

☑ 적용대상

■ 내국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을 적용받은 조합법인 등은 제외)

■ 외국법인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

☑ 적용범위

■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 최저한세 적용 제외대상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법인세법 제55조의2)
- 외국법인의 지점세 (법인세법 제96조)
-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한 법인세(조특법 제100조의32)
- 가산세, 조세감면 등의 사후관리에 따라 추징·납부하는 감면세액, 이자상당가산액
- 최저한세 적용으로 열거되지 않은 세액공제, 세액면제, 감면

☑ 최저한세 계산구조

① A와 B중 큰 금액 + ② 가산세 등 – ③ 외국납부세액 등

① A와 B중 큰 금액

• A : 각종 감면후의 세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 제2호~제4호에 따른 소득공제금액, 손금산입금액, 익금불산입 및 비과세금액, 세액공제, 법인세 면제 및 감면

• B : 각종 감면 전의 과세표준 × 최저한세율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소득공제금액, 손금산입금액, 익금불산입 및 비과세금액 등을 하기 전의 과세표준 × 최저한세율

② 가산세 등 : 가산세, 이자상당가산액, 감면세액의 추징세액

③ 외국납부세액 등 : 외국납부세액, 재해손실세액, 농업소득세액 등

〈 최저한세 적용세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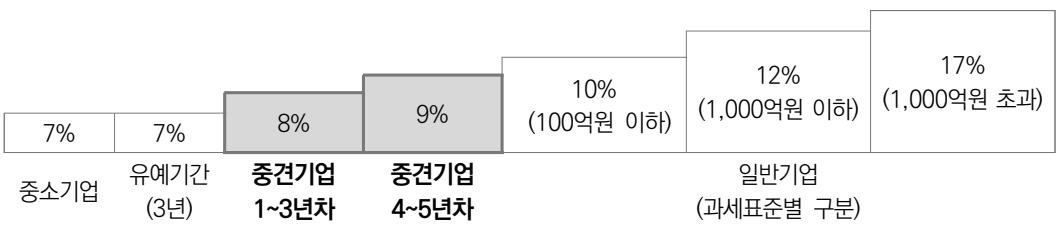

☑ 최저적용으로 배제되는 감면·공제 적용순서

■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는(수정신고, 경정 등 청구 포함) 경우 납세의무자의 임의선택에 따라 적용 배제

■ 정부가 경정하는 경우 아래 순서에 따라 배제한 후 세액을 계산

①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제13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

② 세액공제 (제1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호)

* 동일 조문에 의한 감면세액 중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나중에 발생한 것부터 적용배제

③ 법인세 및 소득세 면제 및 감면 (제132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4호)

④ 소득공제 및 비과세 (제13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

■ 최저한세 적용으로 감면배제되는 세액처리

-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 이월하여 공제
-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세액이 중복되는 경우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시행령 제126조

2 중복지원의 배제

• 동일 투자금액에 대하여 공제·감면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지원

☑ 투자세액공제 중복 적용 배제

■ 동일 자산에 대해서 아래 투자세액공제의 중복적용이 불가하고, 여러 가지 자산을 투자한 경우에는 투자한 자산별로 각각 투자세액공제를 달리 적용 가능

조세특례제한법	조세지원
제8조의3③	수탁기업 시설 투자 세액공제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동일한 과세연도에 아래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는 상호 중복 공제 배제

조세특례제한법	조세지원
제19조①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4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조세지원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29조의5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조세지원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30조의4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중복 적용 배제

■ 동일한 과세연도에 내국법인이 아래의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선택 가능(조특법 제6조제7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 제29조의7 적용 배제)

- 주요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조세지원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12조의2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제31조④,⑤	중소기업 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32조④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62조④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제63조①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제63조의2①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제64조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66조~제68조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85조의6①,②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제99조의9②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제99조의11①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제104조의24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제121조의8 등	제주국제자유도시,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 주요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조세지원
제8조의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시 세액공제
제13조의2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제25조의6	영상콘텐츠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30조의4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104조의14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15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22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25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제122조의4①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26조의7⑧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 동일 사업장 중복 배제

■ 내국법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사업연도에 아래에 해당하는 감면이 중복하여 적용될 수 있는 경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조세지원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12조의2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제31조④,⑤	중소기업 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32조④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62조④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제63조①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제63조의2①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제64조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85조의6①,②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제99조의9②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제99조의11①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제104조의24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제121조의8 등	제주국제자유도시,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 산업시설의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기업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에 대해 조세감면 일부를 배제

☑ 증설투자에 대한 감면배제

■ 배제대상

-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을 계속 경영하고 있는 내국인
- 1990년 1월 1일 이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

  *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을 포함

■ 배제자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한 공장인 경우 : 사업용 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해당 공장 연면적이 증가하는 투자
- 이 외의 경우 : 사업용 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고정자산의 수량, 사업장 연면적이 증가하는 투자(단, 사업용 고정자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 전기통신설비는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제3항)

용어설명

["공장 연면적"이란?]

- 공장 부지면적 또는 공장부지 안에 있는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단, 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체육시설, 기숙사, 대피소, 무기고, 탄약고, 교육시설은 연면적 포함에서 제외)

■ 배제대상 투자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하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공업지역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는 제외

용어설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공업지역"이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및 동법 제51조제3항의 지구단위계획구역중 산업시설의 입지로 이용되는 구역

☑ 사업장 설치 후 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

■ 배제대상

- 중소기업이 아닌 자 중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 배제자산

-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 및 전기통신설비는 제외

■ 배제대상 투자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하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공업지역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는 제외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시행령 제124조, 시행규칙 제53조

4 이월결손금 연간 공제한도

• 2016.1.1부터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신설되어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당해연도 소득의 80%까지만 공제(단, 중소기업은 100%)

☑ 적용대상

■ 과세표준 계산 시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범위 내에서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순차적으로 공제

☑ 한도적용 제외대상

■ 중소기업, 회생계획·기업개선계획·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중인 법인,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유동화거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재편계획을 이행중인 법인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3조, 시행령 제10조, 시행규칙 제4조

V
기 타

기 타

1.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2.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3. 법인세율 산정

1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 모회사와 자회사가 경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소득을 통산하여 법인세를 과세

☑ 적용대상

■ 경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연결가능모법인과 연결가능자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연결가능자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 모두가 연결납세방식 적용대상

- 연결가능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 적용

용어설명

["연결가능법인"이란?]

• 타 내국법인을 연결지배하는 내국법인으로 비영리법인, 청산 중인 법인, 유동화전문회사, 타 내국법인으로부터 연결지배를 받는 법인 등은 제외(「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2제1항)

["연결가능자법인"이란?]

• 타 내국법인으로부터 연결지배받는 내국법인으로 비영리법인, 청산 중인 법인,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제외(「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2제2항)

["완전지배"란?]

•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전부를 보유하는 경우

☑ 연결납세방식 취소·포기·추가·배제

■ (취소) 연결법인의 사업연도가 불일치, 연결지배하지 않은 법인의 연결납세 적용, 연결가능자법인의 연결납세 미적용,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연결지배를 받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취소(「법인세법」 제76조의9)

- 연결납세방식 승인 후 5년 이내 적용승인이 취소된 경우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과 합한 해당법인 소득금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과 합한 해당법인의 결손금은 손금에 산입
- 연결납세방식 적용승인이 취소되면, 5년까지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당시와 동일한 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없음

■ (포기) 연결모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않는 사업연도개시일 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연결납세방식 포기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면 연결납세 포기 가능(「법인세법」 제76조의10)

- 단, 연결납세방식을 최초로 적용받은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까지는 연결납세방식 적용을 포기 할 수 없음

■ (추가) 연결모법인이 새로 다른 내국법인을 연결지배하게 된 경우에는 연결지배가 성립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해당 내국법인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법인세법」 제76조의11)

■ (배제) 연결모법인의 연결지배를 받지 않게 되거나, 해산한 연결자법인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않음(「법인세법」 제76조의12)

- 연결납세방식 적용 후 5년 이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익금 또는 손금에 각각 산입

☑ 연결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의 계산

■ 연결과세표준 계산(「법인세법」 제76조의13)

-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의 범위에서 ① 연결사업연도 개시일 전 15년 이내의 결손금, ② 각 연결법인의 비과세소득 합계액, ③각 연결법인의 소득공제액 합계액을 차례로 뺀 금액

■ 연결집단 산출세액(「법인세법」 제76조의15)

-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연결과세표준에 법인세율을 적용

■ 세액공제와 세액감면(「법인세법」 제76조의16)

- 각 연결법인의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은 각 연결법인별로 계산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최저한세 적용

☑ 신고절차

■ (신고)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납부) 연결모법인은 연결산출세액에서 아래의 법인세액(가산세 제외)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

-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감면세액·세액공제액
-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중간예납세액
-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각 연결법인의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액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76조의8~제76조의19, 시행령 제120조의12~제120조의25, 시행규칙 제60조의2~제60조의4

2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 해당 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금액을 이월하여 공제

☑ 적용대상

■ 표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중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해당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조세지원
제7조의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제7조의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8조의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시 세액공제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②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12조의3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4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3조의2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3조의3	내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에의 출자·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제19조①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제25조의6	영상콘텐츠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7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29조의2	산업수요맞춤형고 등 졸업자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 세액공제
제29조의3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4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 세액공제
제29조의5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
제30조의3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30조의4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96조의3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99조의12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조세지원
제104조의8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14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15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22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25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30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32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제122조의4①	금 사업자, 구리 스크랩 등 사업자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26조의6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126조의7⑧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 지원내용

■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해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법인세에서 공제

- 이월공제액과 해당 과세연도의 세액공제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월공제액을 먼저 공제하고, 이월된 미공제 금액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시행령 제136조의2

3 법인세율 산정

• 기업의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

☑ 적용대상

■ 사업연도에 소득*이 발생한 내국법인

* 각 사업연도의 소득, 청산소득, 토지 등의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 법인세율

■ 과세표준에 각 구간별 세율을 곱한 금액을 법인세액으로 산정

과세표준	법인세액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천8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9%)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37억8,0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1%)
3,000억원 초과	625억8,000만원 + (3,0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 절차 및 제출서류

■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세무조정계산서 등을 납세지(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5조

2024년도 중견기업 지원시책

① 조세

발 행 일 2024년 3월

발 행 처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과
(044) 203-4362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정책팀
(02) 3275-2219

인 쇄 처 경성문화사
(02) 786-2999

www.fomek.or.kr | www.mme.or.kr

2024년도
중견기업 지원시책

1. 조세

FOMEK 한국중견기업연합회
(0415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79(대흥동, 상장회사회관)
TEL : 02-3275-2985 FAX : 02-3275-2989